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367 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8년 9월 5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18년 9월 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반영하고 의회운영에 있어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가 및 결석(안 제7조제2항)
 - (청가 허가권자) 5일이내는 의장, 5일 초과시에는 의회에서 허가
- 입법예고(안 제22조의2)
 - 상위법(지방자치법)에 맞게 용어개정
(입법예고 → 조례안예고, 입법예고문 → 조례안예고문)
- 표결의 참가(안 제44조)
 - 전자투표로 투표할 경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
(투표함이 폐쇄 될 때까지 →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시까지)
- 표결방법(안 제46조제2항)
 - 무기명 투표로 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반안전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완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요구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기타 용어 수정(안 제73조의2, 안 제88조의 2)

- (안 제73조의2) 집행부 → 집행기관, 대집행부질문 → 대집행기관질문

- (안 제88조의2) 도정 질문 → 대집행기관질문

3. 개정규칙안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불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규제관련 사항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시·도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1214(2017.4.11.)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다만, 휴·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의2의 제목 “입법예고”를 “조례안예고”로 하고, 제목외의 제1항부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중 “입법예고”를 “예고(이하 “조례안예고”라 한다)”로 한다.

제2항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예고”로, “입법예고문”을 “조례안예고문”으로 한다.

제3항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예고”로 한다.

제4항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예고”로, “입법예고문”을 “조례안예고문”으로 한다.

제5항 중 “입법예고문”을 “조례안예고문”으로, “입법”을 “조례안”으로 한다.

제6항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예고”로 한다.

제44조 후단의 “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를 “그러나 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집행부를”을 “집행기관을”로, “대집행부질문”을 “대집행기관질문”으로 하고, 제2항 및 제4항의 “대집행부질문”을 “대집행기관질문”으로 한다.

제88조의4 제2항 제5호 중 “도정 질문”을 “대집행기관질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청가 및 결석)①(생략) ② <u>의원의 청가는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장이 허가한다.</u>	제7조(청가 및 결석)①(현행과 같음) ② -----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다만, 휴·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의2(입법예고)①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 전문 등을 <u>입법예고</u>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u>입법예고</u> 를 할 때에는 관련조례를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충청북도 관련부서의 의견과 <u>입법예고문</u> 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u>입법예고</u>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④ <u>입법예고</u> 는 <u>입법예고문</u> 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의장명의로 예고한다. ⑤ <u>입법예고문</u> 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u>입법</u> 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2조의2(<u>조례안예고</u>)① ----- ----- ----- <u>예고</u> (이하 " <u>조례안예고</u> "라 한다) ----- ② ----- <u>조례안예고</u> ----- ----- ----- ----- <u>조례안예고문</u> 을 ----- ----- ③ <u>조례안예고</u> ----- ----- ④ <u>조례안예고</u> 는 <u>조례안예고문</u> ----- ----- ----- --- ⑤ <u>조례안예고문</u> ----- ----- <u>조례안</u> ----- ----- ----- -----

현행	개정안
⑥ 그 밖에 <u>입법예고</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 <u>조례안예고</u> ----- ----- -----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u>그러나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제44조(표결의 참가) ----- ----- ----- <u>그러나 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제46조(표결방법) ① (생략) ② <u>의장의 제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u>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46조(표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u> ----- -----
제73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u>집행부를</u> 대상으로 질문(이하 " <u>대집행부질문</u>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u>대집행부질문</u> 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생략) ④ <u>대집행부질문</u> 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회기 개시일 5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까지 질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제73조의2(집행기관에 대한 질문) ① ----- ----- <u>집행기관을</u> ----- ----- (이하 " <u>대집행기관질문</u> "이라 한다)----- ② <u>대집행기관질문</u> ----- ----- ③ (현행과 같음) ④ <u>대집행기관질문</u> ----- ----- -----

현행	개정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 ----- -----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u>도정</u> <u>질문</u> 현황 6. (생략)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u>대집행</u> <u>기관질문</u> -----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